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26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배준영 · 송석준 · 우재준
한지아 · 박수민 · 김 건
서명옥 · 김재섭 · 김소희
김성원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제정 후 40여 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목적만을 유지한 채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에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으로 그 목적을 재정립하여 수도권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권역의 구분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여 인구감소권역을 신설

하고, 해당 권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을 “수도권의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도권”로, “균형”을 “지속가능하고 균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의”를 “수도권 일부 지역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까지의”를 “제8호까지의”로 한다.

8. 제6조제1항제4호의 인구감소권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인구감소권역”으로 한다.

4. 인구감소권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우려가 있어 적절하게 지원·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0조 중 “성장관리권역”을 “성장관리권역 및 인구감소권역”으로 한

다.

제1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에 귀속된 부담금이 해당 시·도 내 인구감소권역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건전한”을 “지역 간 균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권 정비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수도권의 인</u> <u>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u> <u>고 수도권의</u> ----- ----- <u>지속가능하고 균형</u> ----- -----.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수도권의 인</u> 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제1호부터 <u>제7호까지의</u> 사항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 <u>수도권 일부</u> <u>지역의</u>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6조제1항제4호의 <u>인구감소</u> <u>권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9. ----- <u>제8호까지의</u> ----

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 -----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 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 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u>인구감소권역: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법 제2 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 관심지역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우려가 있어 적 정하게 지원·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u>
② <u>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u> 의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u>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인구감소권역</u> -----.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 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설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 ----- ----- ----- <u>설</u>

<u>장관리권역</u>에 조성한 대지(垓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후단 신설>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u>건전한</u>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u>장관리권역 및 인구감소권역</u>----- ----- ----- ---. 제16조(부담금의 배분) ----- ----- ----- ----- ----- ----- ----- ---. <u>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에 귀속된 부담금이 해당 시·도 내 인구감소권역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u>지역간 균형</u>----- ----- ----- ----- ----- ---. ② (현행과 같음)
---	---